

진료규정

제53조(진료비 및 사용료 수수료의 감면)

- ① 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사용료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.
- ②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“별표 1”과 같다.

[본조개정 2015. 8. 5.] <개정 2015. 10. 1.> <개정 2020. 5.20.>

(별표 1) <신설 2020. 5. 20.><개정 2024. 1. 1.>

구 분	감면대상	감면율
진료비	직원, 이사·감사	30%
	직원가족 (배우자, 자녀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)	20%
	용역·과건 등으로 서귀포의료원에서 종사하는 근로자	30%
	산부인과 초음파 검사(직원)	50%
	장기등 기증자(장기등 기증자 우대증 발급자)	30%
장례식장 시설사용료	직원, 배우자, 자녀	30%
	직원 및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용역·과건 등으로 서귀포의료원에서 종사하는 근로자	20%
	기초생활수급자 본인	30%
	국가유공자(참전유공자) 본인	
	차상위 본인	
	4.3희생자 본인	20%
	국가유공자 유족본인	
	4.3유족본인	